

■ 정책동향

수입선다변화 해제 및 향후 해제품목 예시

산업자원부는 '98. 6. 30일부터 40개 수입선다변화 품목을 해제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98. 12월 해제 예정인 32개 품목과 '99. 6월 해제예정인 16개 품목도 함께 예시하였다.

정부는 세계경제의 개방화·자유화 추세에 맞춰, 대일무역역조를 개선하기 위하여 '78년 도입된 수입선다변화 제도를 '99년말까지 운영하기로 WTO 등에 통보하였으나, 작년말 IMF와 협의시 당초 일정을 다소 앞당겨 '99. 6월말 완전 폐지키로 약속한 바 있다.

산업자원부는 그간 매년 2차례씩 다변화 대상품목을 축소하여 왔으나, 폐지 시한이 앞당겨지면서 대외투명성을 제고하고, 국내 관련업체가 미리 대응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수입선다변화 제도가 완전 폐지되는 '99. 6월까지의 해제 일정과 품목도

함께 예시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산업자원부에 따르면 금년 6월 30일부터 해제되는 품목은 국산화율이 높거나 수출비중이 커진 품목, 기술 및 가격 측면에서 어느정도 대일경쟁력이 확보된 품목, 현재 국내 생산이 되지 않는 품목, 시장규모 및 국내수요 측면에서 대일수입 증가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품목 등을 중심으로 선정되었으며, 현재 기술개발이 진행중인 품목, 내수시장 규모가 큰 품목, 설계 및 기술개발 능력·품질·가격경쟁력 측면에서 상당기간 보호가 필요한 품목중 32개 품목은 '98. 12월에 16개 품목은 '99. 6월에 해제할 예정이며 이에따라 '99. 6월 해제 이후 수입선다변화제도는 완전 폐지된다고 밝혔다.

해제품목 및 해제 예시품목 (전기관련)

- '98. 6월 해제 품목
 - 완전 해제 품목

HS	품목
8504 40 2090	전동기 속도제어장치
8508 10 0000	각종의 전기드릴
8536 50 4000	전자개폐기

－ 부분 해제 품목

HS	현행	조정
8508 80 0000	기타의 수지식 전동공구 다만, 대패·그루버·정타기·함마 ·고주파전동공구·충전식드릴 및 임팩트렌치는 제외	기타의 수지식 전동공구 다만, 전기식의 연마기 또는 광택기 (그라인더, 샌더, 베벨러, 폴리셔)에 한함

－ '98. 12월 해제 예시품목

HS	품목
8502 12 0000	압축점화식의 피스톤식 내연기관을 갖춘 발전세트
8508 80 0000	기타의 수지식 전동공구
8536 20 0000	자동차단기

－ 완전 해제 품목

HS	품목
8516 60 2000	전기밥솥

생활산업 업종별 『수출애로 타개반』 설치·운영

산업자원부는 산하 업종별 단체와 함께 수출기업이 겪는 애로를 직접 해결해 주기 위해, 업종별 단체에는 중견간부를 전담요원으로 하는 『수출애로 타개반』을 설치하여 전 임직원이 신고된 애로의 해결에 나서고, 산업자원부는 생활산업국 국·과장과 직원 모두가 이를 지원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이번에 설치되는 『수출애로 타개반』은 당해 업종 특유의 애로사항과 개별기업의 애로로서, 자체 해결에는 노력과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것들

을 해결해 주는데에 노력을 집중할 예정이다.

산업자원부는 우선 전기공업진흥회, 신발산업협회, 전자산업진흥회 등 생활산업부문의 11개 업종별 단체에 이를 설치하여, 신고된 애로에 대하여 접수부터 처리·회신에 이르기까지 모든 절차에 있어 담당자의 이름을 밝히도록 하여 책임처리를 강화하고, 관련내용을 Code화 하여 관리하는 등 제도개 형식에 치우치지 않도록 운영하고, 신고된 애로에 대하여는 지체없이 처리토록 하며, 처리에

시일이 소요될 경우에는 중간에 처리경과를 해당
기업에 알려주어 궁금증을 해소해 나가도록 할 방
침이다.

공기반사업 우수 기술개발인(Fellow)제도 도입

산업자원부는 공업기반 기술개발사업을 추진하
면서 기업에서 기술개발 책임자를 과제수행중에
차주 교체함에 따라 연구원의 사기저하, 기술축적
기회 상실 등으로 기술개발사업의 효과가 반감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정부의 기술개발사업 효율성
을 제고하기 위하여 공업기반 기술개발사업을 2회
이상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적이 있는 기업, 국공
립연구기관 및 대학의 기술개발 책임자 중에서 우
수기술개발인(Fellow)을 선정하여 향후 공기반사
업 수행시 우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산업자원부는 궁극적으로 IMF체제를 극
복하려면 핵심기술 개발을 통한 상품경쟁력 제고

외에는 다른 길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최근의 어려
운 경제난 때문에 기업내에서 기술개발이 위축되
는 분위기가 확산되어 이를 차단하고 기술개발에
정진하고 있는 우수기술개발인의 안정적인 연구환
경을 조성하기 위해 공업기반 기술개발사업을 성
실하게 수행하고, 사업화 성공으로 무역수지개선
및 기술적 파급효과 등이 큰 연구개발사업을 수행
한 총괄책임자를 공기반사업 우수기술개발인(Fel-
low)으로 지정하여 공기반사업 우수연구원 인증
서를 수여하고 향후 사업추진시에 우대키로 한 것
이다.

'98년 벤처기업 기술개발사업 확정

산업자원부는 단기간내에 조기실용화가 가능하
고 기업의 자주적인 노력만으로 기술향상을 기대
하기 어려운 기술분야를 개발코자 하는 기술혁신
형 중견·중소기업을 집중 지원하기 위하여 '98년
도 공업기반 기술개발사업중 벤처기업 기술개발사
업의 신규지원 대상을 심의·확정하였다.

이번에 확정된 벤처기업 기술개발사업의 금년도
지원 규모는 총 100억원으로 우선 I 단계('98. 5
~10) 사업에 29억원(63건), 추진결과 평가후

II 단계('98. 11~'99. 10) 사업에 나머지 금액
(71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산업자원부에서 '98년 1월 15일에 시행계획을
공고하여 추진하고 있는 벤처기업 기술개발사업은
중견·중소기업의 혁신적 기술개발을 촉진하고 사
업화 지원을 통하여 벤처기업을 중점 육성·지원
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신청자격은 「벤처기업 육성
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 정하는 지원 대상으로서
「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통상산업부고시 제

1996-389호)에 해당하는 기술을 개발코자 하는 경우이다.

조세감면 고도기술사업 확대

외국인 투자자들이 국내 투자시 각종 조세상의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조세감면 고도기술사업'의 범위가 대폭 확대된다.

산업자원부는 외국인 투자유치를 활성화 하기 위해 '조세감면대상 고도기술사업' 범위를 현행 265개 사업에서 29개를 삭제하는 대신 271개를 신설, 507개로 확대 조정한다고 밝혔다.

조정된 내용을 업종별로 보면 전자·정보 및 전기분야가 현행 79개에서 92개로, 정밀기계 및 신공정은 36개에서 74개로, 재료·소재는 38개에서 73개로, 신물질·생물산업은 21개에서 46개, 광

학·의료기기는 14개에서 19개로 각각 확대된다.

또 항공·수송기계분야는 35개에서 49개, 환경·에너지가 32개에서 89개, 건설·사회기반 시설이 10개에서 55개로 각각 확대되고 첨단산업을 지원하는 공통서비스 업종으로 10개의 사업이 신설된다.

산자부는 이와 별도로 기존의 51개 고도기술사업은 그 적용범위를 확대하거나 일부 추가했고 10개의 사업은 기술발전 추세에 따라 규격을 상향 조정하거나 일부 삭제했다.

'수출산업화 업체 지정제도' 新設

정부는 2천년 말까지 중소기업의 수출비중을 50% 수준 이상으로 높이기 위해 '수출산업화 업체 지정제도'를 신설, 이들 업체에 대한 마케팅·기술·디자인·품질 등 종합적인 지원체제를 구축키로 했다. 이와함께 전국 12개 도시에 중소기업 수출종합 지원센터를 설치해 수출지원 일관서비스 및 중소 수출산업화 업체에 대한 관리에 주력기로 했다.

이에따라 정부는 수출의 활성화 차원에서 중소기업의 수출비중을 2천년 말까지 대만 수준인 50% 이상으로 끌어 올리기로 하고, 수출산업화 업

체 지정제도를 신설해 중소기업의 수출기반을 확충키로 했다.

수출산업화 업체 지정대상은 수출실적이 연간 800만달러 이하의 중소기업체로 매출액중 수출비중이 70% 이하의 중소 수출업체, 수출전환 벤처기업, 창업보육센터 및 기술혁신센터의 지원을 받고 있는 업체중 수출 추진업체 등이다.

수출산업화 업체는 정부로 부터 마케팅·기술·디자인·품질 등에 대해 지도를 받게되며 수출보험부보 및 신용보증서발급 업무 등에 대해서도 지원을 받게 된다.

중소 해외규격인증 본격 지원

중소기업 수출의 큰 걸림돌 가운데 하나로 지목돼 온 해외인증 획득의 어려움이 크게 완화될 전망이다.

중소기업청은 수출오더를 받고도 수입국의 품질 등과 관련된 규격·인증을 따내지 못해 애로를 겪는 수출 중소기업 100개사를 선정, 전문기관 및 전문컨설턴트에 위탁해 기술지도를 실시하는 등 해외의 유명규격 획득 지원에 적극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다.

중기청은 이를 위해 조만간 구체적인 선정기준

등을 마련, 업체들로 부터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해외유명인증 획득지원 대상업체로 선정되면 생산기술연구원 등 전문기관 및 컨설턴트로 부터 해외기술정보 제공이나 인증마크 신청에서 부터 제품시험, 인증획득에 이르기까지 모든 절차를 대행 받게 된다.

중기청은 또 '99년중 37억원의 예산을 확보, 모두 500개 업체에 해외 인증획득에 소요되는 자금의 70%(업체당 평균 700만원)를 지원하기로 했다.

외국인력 대체고용기업 지원 확대

외국인력을 내보내고 내국인으로 대체고용한 기업에 대한 지원이 확대된다.

중소기업청은 중소·벤처기업 창업자금 등의 지원에 관한 운영요령 중 개정고시를 내고 외국인력의 내국인 대체고용기업에 대한 운전자금의 업체당 한도를 기존의 1억원에서 2억원으로 크게 늘렸다.

또 업체당 기본 2천만원에 대체고용 1인당 1천만원씩 지원하던 것을 기본 5천만원에 대체고용 1인당 3천만원으로 지원 규모도 확대했다.

이같은 지원기준 상향조정은 이미 지원을 받은

기업들이나 지원절차가 진행중인 기업들에게도 추가 적용된다.

중기청의 이번 조치는 내·외국인간 임금격차를 실질적으로 보전해 달라는 중소기업계의 요청을 받아들인 것으로 본격 적용에 들어갔다.

중기청은 이와 함께 당초 공고일 이후에 외국인력을 출국시킨 기업만 지원 대상으로 하던 것을 자금지원 공고일(4월 21일) 이전이라도 외국인 불법취업자를 자진신고기간('97. 12. 27~'98. 4. 30)내에 출국시키고 내국인을 대체고용했거나 고용하고자 하는 기업까지 포함시켰다.



전기용품 안전관리법 개정안 입법예고

그동안 국립기술품질원이 담당해 온 형식승인제도가 앞으로 민간인증기관에서 직접 시험·인증 처리한다. 또한 「형식승인」도 「안전인증」으로 명칭이 바뀐다.

산업자원부는 전기용품의 규제완화 시책에 적극 부합하고 제3자 인증방식이 통용되는 국제적 추세에 발맞추어 민간인증기관에서 시험과 인증을 동시에 처리할 수 있게 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는 전기용품 안전관리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전기적 위해의 발생우려가 큰 품목은 안전인증을 의무화 하고, 나머지 전기용품은 자율적인 안전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지정 시험관의 시험을 거쳐 국립기술품질원이 직접 형식승인 하던 것을 산업자원부 장관이 지정하는 민간안전인증기관에서 시험·인증을 동시에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형식구분별 승인제도를 제품의 모델별로 안전인증을 받는 제도로

전환하여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부품을 변경하는 경우 별도의 인증을 받도록 함으로써 전기용품의 무단개조를 방지하였으며 「형식승인」을 「안전인증」으로 명칭을 변경, 지금의 「전」 마크를 대체할 새로운 마크를 시행규칙에서 개정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번 전기용품안전관리법의 개정으로 전기용품안전관리제도가 수입억제를 위해 운용하고 있다는 국제적 오해를 벗음으로써 자유무역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됐으며 안전관리에 내실을 기함으로써 전기적 상식이 적은 소비자가 안심하고 전기용품을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했다.

또, 전기용품에 대한 상호인정협정체결이 본격화 됨에 따라 수출업자가 인증에 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절감함으로써 수출증대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개정된 법률안은 2000년 부터 본격시행될 방침이다.

